## 유학생 시간제 취업 허가 기준

허용분야	통상적으로 대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 ① 통역·번역 보조, 조리사 보조, 일반 사무보조, 관광안내 보조, 면세점 판매 보조 등 ② 일-학습연계 유학생(D-2-7)의 전문분야(E-1~E-7) 인턴 활동 ③ 방학 기간 중 학위과정 유학생의 전문분야(E-1~E-7) 인턴 활동						
허가제한분야	전문분야(E-1~E-7) 활동범위, 제조업, 건설업, 어선원, 유흥업소, 노래연습장, 개인 과외교습, 미성년 학생 대상 외국어 교육 유관 시설(영어키즈카페, 영어캠프, 외국어회화학원 등), 택배기사, 배달대행업체 라이더, 대리기사 등 파견, 도급, 알선 관계에 따른 취업, 원거리 근무(지방 최대 60 분 이내 거리) 등 ※ 제조업의 경우 TOPIK 4급 이상, 사회통합프로그램 4 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 점 이상 취득, 세종학당 중급 2 과정 이수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						
대상		D-2 (학부)			D-4 (어학연수)		
허용시기	입호	학 첫 학기부터 가능	·, 체류기	간 내 최장 1년	체류 자격 변경일(사증 소지자는 입국일)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야 함		
허가기간	체류기간 1년 이내에서 장소 최대 2곳에 한정				체류기간 6개월 이내에서 장소 최대 1곳에 한정		
	ж <sup>с</sup>	직전학기 평균 성 입학 이후 첫 학기 수 미발급된 경	∸강 중인	자로 성적표가	출석률이 전체 이수학기 평균 90% 이상		
허가기준	학년	한국어능력수준 ① TOPIK ②사회통합프로그램 ③ 세종학당		허가시간	한국어능력수준 ① TOPIK ② 사회통합프로그램 ③ 세종학당		허가시간
	1~2 학년	① 3급 ② 3단계 이상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	X O	1주 10시간 1주 25시간 (성적우수 or 한국어우수의 경우 30시간) 주말·방학: 무제한	① 2급 ② 2단계 이상 이수 또는	Х	1주 10시간
	3~4 학년	① 4급 ② 4단계 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81점 이상 ③ 중급2 이상	X O	1주 10시간  1주 25시간 (성적우수 or 한국어우수의 경우 30시간) 주말·방학: 무제한	아무 모든 사전평가 41점 이상 ③ 중급1 이상	0	1주 20시간 (성적우수, 한국어우수의 경우 25시간)
	※ '성적우수'는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 A학점(4.0) 이상, '한국어우수'는 TOPIK 5급 이상 또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5단계 이수하거나 종합 평가 합격한 사람을 의미, 해당자에게 주중 5시간 추가 허용 ※ 한국어능력기준을 충족한 학위과정(D-2) 유학생은 학기 중 주말·공휴일 및 방학 기간동안 허용 시간의 제한 없이 '시간제 취업허가를 받고' 취업활동 가능 ※ (영어트랙과정 입학자) 학년에 관계없이 TOEFL 530(CBT 197, iBT 71), IELTS 5.5, CEFR B2, TEPS 601점(NEW TEPS 327점) 이상 기준을 충족 시 한국어 능력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※ 단, 영어를 모국어 또는 공용어로 하는 국가 유학생은 증빙서류 제출 면제 ※ 시간제취업 허가기준은 추후 출입국관리사무소 법령에 따라 변경되거나 상이 할 수 있음						

신청방법	신청 서류 준비 → 사무실 방문 → 대학 담당자 서명 → 온라인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방문 신청 → 허가 승인							
	확인 후 근무							
	- 신청서, 여권, 외국인 등록증							
신청서류	- 성적 또는 출석 증명서							
	- 한국어 능력 증빙 서류(유효 기관이 도과한 TOPIK 성적 증명서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							
	성적 증명서도 인정 가능)							
	-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확인서(대학의 유학생 담당자 작성)							
	-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요건 준수 확인서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							
	※ 사업자 등록증에 제조업, 건설업이 포함된 경우에 한함							
	- 사업자 등록증 사본							
	- 표준근로계약서 사본(사업자등록증상의 당사자간 계약, 시급 및 근무 내용, 시간이 포함되어 있을 것)							
주의사항	※ 아르바이트 시작 전에 반드시 시간제취업 신청 및 허가승인을 받아야함							
	※ 고용주를 달리하여 근무 장소가 <u>변경</u> 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다시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함							
	※ 허가기간 내 취업 장소가 변경 될 경우,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취업 장소 변경 신고 해야함							
	※ 허가 받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 될 경우, 엄중 경고, 시간제 취업 불허, 유학 자격 취소. 강제 퇴거							
	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							
기타	- 일-학습연계 유학생(D-2-7)의 전문분야(E-1~E-1) 인턴 활동 허용(시간제 취업허가 필요)							
	※ 재학 기간 중 1회 최대 6개월, 방학 중 횟수 제한없음							
	- 방학 기간에 한하여, 학위과정 유학생(D-2)의 대학 외부 기관 및 기업체에서의 전문분야(E-1~E-7) 인턴 활							
	동 허용(시간제 취업허가 필요)							
	※ 연구유학(D-2-5) 제외							
	- 현장실습 활동							
	구분	면제 가능 여부						
	표준 현장실습	시간제 취업허가 면제						
	필수 현장실습	시간제 취업허가 면제						
	자율 현장실습	시간제 취업허가 필요						